

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발생으로 입원 또는 격리를 이행한 근로자에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확인합니다.

사업장명		사업주명	
근로자		근로자 주민등록번호	
유급휴가 기간(일수)	~ (일)		
유급휴가 사유	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	

1. 사업주는 위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입원 또는 격리 등을 사유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*를 부여하였고,
* 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(연월차)는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른 유급휴가 대상이 아님
2. 근로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입원 또는 격리참여에 등록하여 격리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, 동일한 사유로 생활지원비*를 지원받지 않았고 향후에도 지원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* 「감염병예방법」 제70조의4(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)
3. 만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, 지원금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사업주 : (서명)

근로자 : (서명)

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

유급휴가 지원사업은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라, **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**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지원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1. 사업주는 **코로나19로 입원·격리된 근로자, 사업장에 등록된 근로자만을** 대상으로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해당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

2.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만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단,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

가. 유급휴가 기간 내 근로자에게 무급휴가 지시

나. 유급휴가 기간 내 근로자에게 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따른 휴가 지시

다. 유급휴가 기간 내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(재택근무·원격근무 등 포함)

해당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

3) 사업주는 「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」 제출 시,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경우에만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해당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

4) 사업주는 실제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단,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

가. 실제 제공한 유급휴가 기간보다 더 긴 기간에 대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

나. 실제 일급을 전부 제공하지 않은 경우(예 : 일급의 70%만 지급한 경우)

해당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

사업주는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, 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「공공재정환수법」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지원금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「형법」 제347조에 의거 사기죄 성립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확인자 : (서명)